

# 上海專利 事務所

## 目 次

- I. 上海專利事務所
- II.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CCPIT)特許代理機構
- III. 中國專利代理有限公司
- IV. 永新專利代理有限公司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다음號〉

1985년 4月 1日 中國專利(特許)法의 施行以後 工業所有權業界에서는 中國으로의 特許進出을 대비한 制度研究 및 準備를 꾸준히 진행시켜 왔으며,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中國과의 경제분야교류가 급속도로 신장됨에 따라 特許진출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中國特許局이 대한민국 국적의 特許出願을 受理키로 한 금년부터는 特許出願이 활발해지리라 예상된다.

이에 中國에 대한 外國人의 特許出願대리업무를 하도록 國務院에 의해 지정된 4個 機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번호에는 지난 7日 본회를 방문한 上海專利事務所의 須一平(Xu Yi-Ping)所長과 吳容珍(Wu Rong-Zhen)( 국제부 )氏로부터 상해전리사무소의 역할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나머지 3個 機關들에 대하여는 다음號에 연재키로 한다.

▲中國에 있어서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法的 장치는?

◎基本的으로 發明, 實用新型(이하 實用新案이라 함) 및 外觀設計(이하 “意匠”이라 함) 등 3종류의 창작을 각각 發明特許·實用新案特許 및 意匠特許로 보호하는 中國專利法(이하 “中國特許法”이라 함) (1985. 4. 1. 發効)과 商標를 보호하는 中國商標法(1983. 3. 1 發効) 등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中國의 工業所有權 担當 機關은?

◎韓國은 特許·實用新案·意匠

및 商標의 출원수리·심사 및 등록등 공업소유권관련 제반 업무를 特許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데 반해서 中國에서는 特許(發明特許·實用新案特許·意匠特許)는 國務院 직속으로 國家技術委員會에서 관리하는 專利局(特許局)에서 담당하며, 商標는 國務院직속인 國家工商行政管理局 산하 商標局에서 담당하는 등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外國人으로서 中國에 特許 또는 商標出願을 하려면?

◎特許法 第19條 및 商標法 第1

0條에 따라 國務院에 의해 指定된 代理機關에 委任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에서 外國人關係特許事務를 취급할 수 있도록 지정된 機構로는 特許法實施細則 第14조에 明示된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CCPIT), 上海專利事務所 및 中國專利代理有限公司(香港子재) 등 3개와 87년에 추가로 지정된 永新專利代理有限公司(香港子재) 등 4個 機構가 있으며, 外國人關聯 商標事務를 취급할 수 있는 기구란 商標法實施細則 第29條에 明示된 CCPIT와 中國專利代理有限公司(香港) 및 영신 전리대리유한공사 등이 있다.

### ▲ 上海專利事務所의 설립 및 성격은?

◎ 우리 事務所는 政府機關이 아닌 獨립민간기구로 오랜 준비 끝에 1984年 9月 15일에 設立되었으며, 外國人關聯 特許事務를 취급할 수 있도록 國務院에 의해 지정된 4個의 機構中 하나이다.

### ▲ 上海專利事務所의 주요업무는?

◎ 우리 사무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中國特許出願에 관한 助言
- 特許檢索 修行
- 出願書 準備, 鑄譯 또는 修正
- 顧客을 代理하여 出願, 實體審查請求 등 出願節次 수행 및 特許局의 決定에 對하여 顧客에게 의견 제시
- 特許의 正當한 權利를 유지하고 特許權者의 위임을 받아 特定한 特許의 中國에서의 可能한 侵害에 대한 감시
- 異議申請 節次 및 無効訴訟에 있어서 顧客을 代理
- 中國에서의 特許의 實施 및 技術移轉에 관한 助言 및 相談
- 라이센싱, 技術移轉 및 契約準備 등에 있어서 顧客을 지원
- 特許紛爭의 조정
- 特許를 取得하는 方法, 無効 또는 侵害訴訟 및 中裁를 處理하는 方法등에 관한 助言 및 相談

### ▲ 貴 事務所의 구성은?

◎ 위와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우리 事務所는 9個 部署와 하나의 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技術分野 및 法律

分野의 專門家 115名 (그중 변리사가 60名, 변호사가 11名이다) 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各 部署의 역할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電子電器代理部(14名)
- 나. 化學化工代理部(14名)  
→ 特許(發明, 實用新案, 意匠)의 出願代理業務
- 다. 機械代理部(14名)
- 라. 特許技術實施部(10名); 라이센싱등 기술이전업무
- 마. 法律部(7名); 侵害訴訟의 代理 및 裁判所의 수속업무
- 바. 文獻서비스部(8名);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특허문헌의 검색서비스를 수행
- 사. 國際事務部(4名); 世界各國과 연락하여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各國의 고객들과의 접촉업무
- 아. 綜合事務部(20名); 出願書類의 접수, 작성 및 特許廳에의 제출 등 사무소내의 전반적인 흐름을 조정
- 자. 行政管理部(7名); 사무소의 예산, 회계 등의 행정관리업무
- 차. 所長室(7名); 所長, 副所長, 所長補佐役 등으로 구성되며, 사무소내의 主要한人事, 운영방침 등을 결정하는 最高機構

### ▲ 출원의뢰시 구비서류는?

◎ 發明 또는 實用新案特許出願의 경우에는 發明의 名稱, 出願人姓名, 住所 및 國籍, 우선권주장여부, 明細書, 청구의 범위, 圖面 (필요한 경우), 先行技術자료,

出願의뢰서와 가장 중요한 委任狀 등 필요한 모든 관련서류 및 정보를 구비하여야 한다. 의장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서지적 사항, 위임장, 의뢰서, 도면 또는 사진, 의장을 표현할 物品 및 그 物品이 속하는 區分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지난 몇년간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委任狀樣式外에 出願人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따라서 만일 出願人이 이미 美國에 특허출원을 했다면 美國 出願書類 寫本을 委任狀 및 의뢰서와 함께 우리에게 보내면 된다.

### ▲ 出願依賴時 言語 및 번역은?

◎ 英語 또는 日語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事件을 담당한 辦理士가 직접 번역 및 수정을 하며 출원서의 明細書에 잘못이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그것을 정정하는 방법에 관한 의견제시와 함께 즉시 통지할 것이며 그에 따른 出願人の 指示를 받자마자 수정된다.

또한 양질의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所長 및 副所長에 의해 최종적으로 검토된다.

### ▲ 處理期間은?

◎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볼때 대략 30Page의 영문으로된 출원서류의 경우 출원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특허국에 출원하기까지 7~10日이 소요된다. 지금으로 요청하면 3日內에도 처리가 가능하며 가장 빠른 경우 하루만에 출원된 것도 있었다. 또한 中國

特許局은 상해에 支局을 두고 있기 때문에 上海支局에 出願은 접수하자마자 곧 出願日과 仮出願番號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는 Fax 또는 Telex를 통하여 출원인에게 통지된다.  
 ▲通信手段은?  
 ◎통상 출원서류는 항공우편

(DHL등)으로 보내면 되며 급한 경우에는 Fax를 이용할 수 있다.

### 中國의 特許出願 節次에 있어서의 期限

단 계	期 限
1.우선권주장출원 -發明特許 · 實用新案特許 -意匠特許	最初의 우선일부터 12個月 以內 最初의 우선일로부터 6個月 以內
2.우선권주장과 관련한 증빙서류 제출	出願日로부터 3個月 以內
3.최초의 명세서 범위내의 發明特許出願에 대한 자진보정	出願日로부터 15個月 以內
4.조기공개 신청	出願時
5.조기공개	出願日로부터 18個月 以內
6.實體審查請求	出願日로부터 3年 以內
7.處分에 대한 意見書 提出	통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3個月 以內로 특허국에 의해 지정된 기간內
8.이의신청	특허출원공고일로부터 3個月 以內
9.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이의신청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個月 以內
10.拒節査定에 대한 再審查請求	거절사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個月 以內
11.特許再審查部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人民法院에 의 소송제기	결정서의 수령일로부터 3個月 以內
12.存續期間 ; 發明特許 實用新案特許 意匠特許	出願日로부터 15年 出願日로부터 5年(3年 更新可能) 出願日로부터 5年(3年 更新可能)
13.實用新案特許 및 意匠特許의 更新申請	존속기간 만료전 6個月 以內
14.特許權侵害에 관한 소송제기 시효	특허권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침해행위를 알게된 날로부터 2年
15.강제실시권의 허여	특허권허여일로부터 3年이 경과한 후
16.특허권자가 강제실시권 허여결정 또는 실시료에 관한 중재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의 소송제기	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3個月 以內
17.어느一方의 침해에 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의 소송제기	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3個月 以內
18.라이센스 계약의 특허국에의 통지 및 등록	조인된 라이센스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個月 以內
19.特許證料 納付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個月 以內

特許手數料 및 辨理士 報酬標準額表

項 目	發 明		實用新案		意 匠	
	手數料 유안(元)	변리사 報酬額 US\$	手教料 유안(元)	변리사 報酬額 US\$	手教料 유안(元)	변리사 報酬額 US\$
1. 出願	150	300	100	250	80	175
(1) 청구항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각 청구항마다	20		20		20	
(2) 30Page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각 Page 當	15		15		15	
(3) 300Page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각 Page 當	30		30		30	
2. 實業登録申請	400	50				
3. 조기공개 신청		50		50		50
4. 出願取下		50		50		50
5. 명세서의 보정		*		*		
6. 再審查 請求	200	125	100	125	80	100
7. 異議申請參加		*		*		*
8. 異權申請	30	200	20	200	20	150
9. 이의신청절차에 있어서 진술이 필요한 경우의 추가료 (구두) (서면)		*		*		*
		(300)		(300)		(200)
10. 無効請求	300	350	200	300	150	225
11. 성명, 주소, 법인명, 출원인의 서명 또는 인장등의 변경등 재	10	30	10	30	10	30
12. 기간의 연장 또는 기일의 변경		30		30		30
13. 양도의 등록		100		100		100
14. 강제실시권의 실시료에 관한 중재신청	100	5	100	5		
15. 강제실시권 허여신청	300	50	200	30		
16. 갱신료			100	45	100	45
17. 출원유지료(每年)	100	10				
18. 年차료(每年)						
(1) 發明						
1~3年	200	20				
4~6年	300	25				
7~9年	600	30				
10~12年	1200	40				
13~15年	2400	60				
(2) 實用新案 및 의匠						
1~3年			100	15	50	15
4~5年			200	25	100	20
6~8年			300	40	200	30

特許手數料 및 辨理士수임료

項 目	發 明		實用新案		意 匠	
	手數料 유안(元)	변리사 報酬額 US\$	手教料 유안(元)	변리사 報酬額 US\$	手教料 유안(元)	변리사 報酬額 US\$
19. 년차료납부 기간의 연장(6個月以内)		20		15		15
20. 기타						
(1) 하나의 우선권 주장		35		35		35
(2) 2이상의 우선권 주장(추가전당)		25		25		25
(3) 출원서류의 지연제출		35		35		35
(4) 처분서류의 수령 및 발송		35		35		35
(5) 우선권 증명료	20	25	20	25	20	25
(6) 特許證料	100	25	50	25	50	25
(7) 변역(原本의 100단어당)						
영어→중국어		12		12		12
일어→중국어(일어 100字당)		8		8		8
불어, 독어→중국어		14		14		14
중국어→영어 또는 일어(중국어 100字당)		14		14		14
중국어→불어 또는 독어(중국어 100字당)		20		20		20
(8) 타이핑	A4용지 1枚當 16MO용지 1枚當	5 4		5 4		5 4
(9) 복사(1枚當)		0.45		0.45		0.45

註

- 上記 手教料는 납부시의 환율에 따라 달러로 환산하여 청구된다.
- “\*”표시는 소요된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변리사 報酬額을 의미한다.
- 手數料는 中國特許局 公告 第4號 및 第 11號로 정해진 것이다.

▲연락처

Address:中國上海市 延安西路 601號 (601 Yan'an Xilu, Shanghai, P.R.C)

Tel.:86-21-313852, 587418 Telex:33486 SPACN Fax:86-21-511577 〈계속〉 〈金亨昊記〉

案

中國技術轉移促進會員企業

內

- ◎ 相談日時 : 每日 10:00~16:00  
(土曜일은 10:00~12:00)
- ◎ 相談料 : 無 料
- ◎ 相談依頼者 : 本會 會員企業(非會員일 경우  
特請에 限함)
- ◎ 相談分野 및範圍
  - 出願·異議申請·登録節次 및 要領
  - 工業所有權紛爭의 預防 및 事後處理
  - 社內 特許管理要領·職務發明補償制度 運用方案

- 4) 工業所有權 實施斡旋 및 活用
- 5) 企業內 工業所有權專擔機構設置方案
- 6) 其他 工業所有權에 관한 諸般事項
- ◎ 結果處理
  - 相談依頼會員社에 直接回答
  - 相談에 關聯되는 秘密事項은 保障되며 公開可能한 事項은 本會 會誌 또는 文庫輯으로 刊行 配布
- ◎ 相談處 : 本會 發明振興部 및 調查資料部  
(557-1077~8, 568-8263·8267)